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로 확대 개편하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을 우대 지원하는 등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정비(제19조, 제21조, 제21조의3)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사업장의 계속 고용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수준 개선(제84조, 제86조)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 수당을 우대 지원하고 고임금 근로자,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취업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다.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제95조의3)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상향함

라.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제104조의5)

「예술인 복지법」([법률 제19596호, 2023. 8. 8., 일부개정, 2024. 2. 9
시행 예정])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22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2.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려는 날의 직전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그 조치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3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안”을 “동안 피보험자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를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로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

제84조제1항제2호 전단 중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업 또는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취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재취직한 날 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95조의3의 제목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를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개월”을 “18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3개월까지:”를 “6개월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4개월째”를 “7개월째”로 한다.

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
제104조의5제1항제1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가 실시된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

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4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 ----- ----- -----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및 제22조에서 같다]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 ----- -----.
<신 설>	1.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신 설>	2. 사업주가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신 설>	3.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하려는 날의 직전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그 조치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피보험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② (생략)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삭 제>

보험연도의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240일에 이를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④ 삭 제

⑤ (생략)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
자 지원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
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
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
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
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
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
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
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
자 지원요건 등) ①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두 갖춘 경우(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나.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 중
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18
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180일 한도로 지급한다.

④ (생략)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동안 피보험자별
 _____.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략)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
-----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
-----.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로서 6개월 이상 계

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신설>

② (생략)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

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 -----
-----.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업 또는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으로 재취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당청구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채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95조의3(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
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

-----, 다만, 이
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는 6
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
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재취
직한 날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
의 특례) ① -----

----- 18개월 -----

1. ----- 6개월까
지: -----

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

가. ~ 다.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u>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u> <u>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u> <u>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u> <u>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u> <u>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u> <u>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u> <u>만원</u>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 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 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 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 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 <u>호에 따른 예술인</u>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2. ----- 7개월째----- -----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 ----- ----- ----- -----.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 <u>호의2</u>----- 2.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 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 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 려는 사람 ② ~ ④ (생 략)	제1항 ----- -----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2